

 국토교통부	<h1>보 도 자 료</h1>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배포일시	2022. 4. 15.(금) / 총 3매(본문2 참고1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	담당자	• 과장 안세희, 사무관 황규오, 전문위원 김두현 • ☎ (044) 201-4945, 4944, 4943
	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	담당자	• 과장 송태복, 사무관 한우리 • ☎ (044) 201-1551, 1558
	해양수산부 어촌어항채생과	담당자	• 과장 김태경, 사무관 김수정 • ☎ (044) 200-6170, 6048
보 도 일 시		2022년 4월 18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18.(월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방치된 빈집, 지역재생 · 성장동력으로 선순환 국토부-농식품부-해수부, 빈집 관리 협력 맞손

- 도시 · 농어촌지역 빈집 통합 관리, 통계 고도화 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, 이하 국토부)와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, 해양수산부(장관 문성혁, 이하 해수부)는 4월 18일(월)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 빈집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'22년 전국 빈집*은 10.8만호이며, 인구유출 심화, 고령화 등 지역 공동화 위협으로 장기 방치되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.
 - * 시장·군수 등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음을 확인한 주택
 - 장기 방치된 빈집은 노후화로 인해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 사고 위험과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꼼꼼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하다.

- 그러나 빈집 문제의 소관부처가 도시지역은 국토부, 농촌지역은 농식품부, 어촌지역은 해수부로 분산되어있고, 빈집 관리에 관한 법령*과 기준도 달라 빈집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.

* 국토부는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, 농식품부·해수부는 「농어촌정비법」 적용

-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부처는 도시·농어촌 빈집 정보 통합 관리,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정책에 관한 업무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.

- 우선 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빈집 실태 조사 기준을 일원화하고, 도시·농어촌지역 정보가 통합된 전국 단위 통계를 구축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.

- 중장기적으로는 빈집 정비 기준, 제도적 지원 등을 담은 빈집법* (가칭)을 제정하고, 빈집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.

* (예) 일본 : 빈집 소유자의 책임, 공공 개입 근거를 담은 ‘빈집 특별조치법’ 제정(‘14)

- 나아가 빈집 정비 지원사업 발굴, 세제 개편 및 제도 연구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.

-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“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빈집 관리·정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되었다”며,

- “공신력 있고 활용도 높은 빈집 통계를 조속히 국민에게 제공하고, 빈집 정비 활성화를 통해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만들어, 지역재생·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가져올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심 주택공급협력과 황규오 사무관(☎044-201-494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빈집 업무 주관부처로서 국토교통부(이하 '국토부'),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'농식품부') 및 해양수산부(이하 '해수부') 및 는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 정비·관리·활용을 위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.

1. 본 협약은 빈집 문제에 대한 통합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체계적인 빈집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.
2. 국토부, 농식품부 및 해수부는 빈집 통계 관리의 고도화를 위해 도시 및 농어촌지역의 통일된 현황DB를 구축하고 공신력·정확도·활용도 높은 전국 단위 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3. 각 기관은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·「농어촌 정비법」에서 정한 전문기관에게 통계 관리·제공을 위탁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해 국가의 빈집 통계 관리 권한 확보·실태조사 지침의 일원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.
4. 중장기적으로 국가 승인 통계화, 빈집 활용 및 정ب지원을 위한 통일된 빈집법 제정, 빈집 사업발굴, 관련 예산 지원, 세제 개편 등 제도 연구·정비를 적극 노력한다.

2022년 4월 18일

국토교통부
주택토지실장

농림축산식품부
차관보

해양수산부
수산정책실장